

총이사회 행정위원회의 현행 규정
STANDING RULES F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OF THE GENERAL BOARD

(1970 년에 행정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고,
1972, 1980, 1989, 1994, 1998, 2009, 2011, 2014 에 개정되었다)

다음 규칙은 미국과 캐나다의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이사회에의 경건한 업무를 기술한다.

1. 회원 MEMBERSHIP

1.1. 행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 는 20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1.1. 9 명은 총이사회에 투표권이 있는 위원이다.

1.1.2.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총회장 목사와 총회 의장은 투표권이 있는 당연직 Ex officio 으로 활동한다.

1.1.3. 총회 행정사역 협의회 Council of General Ministries 로 명명된 두 대표와 지방 회장 협회 College of Regional Ministers 로 명명된 두 대표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Ex officio 으로 활동한다.

1.1.4. 다음과 같은 크리스천교회(제자회) 총회의 공동 임원들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Ex officio 으로 활동한다.¹

1.1.4.1. 공동 사무관 Corporate Secretary

1.1.4.2. 협회 재무담당 Treasurer of the Corporation

1.1.4.3. 총회 의회법학자 Parliamentarian of the General Assembly

2. 업무 편성 ORGANIZATION FOR WORK

2.1. 책임 Responsibilities

2.1.1. 총이사회에의 정책과 조치를 실행하고, 총이사회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는 여러가지 의무와 책임을 수행한다.²

2.1.2. 총이사회에 의해 검토와 평가된 모든 제안들과 총회에 의한 합당한 처리를 진척시키도록,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업무를 위한 장기간 계획을 제공한다.³

¹도안 The Design 60

²도안 The Design 62

³도안 The Design 63

- 2.1.3. 그런 조치들이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정책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 행정부서의 활동을 조정하고 장려한다.⁴
- 2.1.4. 총회에서 선출된 제직으로 공석을 채우고, 차기 정기 총회에서 총회 비준을 받는다.⁵
- 2.1.5.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조직, 업무, 임무, 삶의 능률과 효과를 개발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권고를, 총이사회의 통치위원회 General Board's Governance Committee 를 통해 총회에 제출한다.⁶
- 2.1.6. 총이사회의 선교재정위원회 General Board's Mission Finance Committee와 협의하여,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고등교육기관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과 여러 지역의 제정과 총회 행정사역에 대한 예산 및 홍보 절차의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⁷
- 2.1.7. 총이사회의 회의를 위한 사업 안건을 준비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이사회 현행 규정이나 총회 절차의 특별 규정이나 도안 The Design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를 구성한다.⁸
- 2.1.8. 개체 회원, 목사, 교회, 지역 또는 총회 행정사역에 의해 회부된 불만과 이의 제기의 문제를 처리한다.⁹
- 2.1.9. 501(c) (3) 세금 상황을 유지하도록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을 대신하여 조치한다.¹⁰

2.2. 의사록과 조치 Minutes and Actions

- 2.2.1. 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록은 총이사회의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실행위원회의 Executive Session 와 관련된 회의록은 총회장 목사 사무실의 문서 보관 및 폐기 정책에 따라 정리되나, 배포되지 않는다.
- 2.2.2. 행정위원회의 모든 조치는 총이사회의 차기 회의에 보고되며, 검토 및 비준을 받는다.

3. 임원 OFFICERS

- 3.1. 총회 의장 Moderator 은 행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¹¹

⁴도안 The Design 63

⁵도안 The Design 64

⁶도안 The Design 64

⁷도안 The Design 65

⁸도안 The Design 65

⁹도안 The Design 66

¹⁰도안 The Design 65

¹¹도안 The Design 47a

3.2. 기타 임원 **Other Officers** 은 행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총회 의장과 총회장 목사에게 의해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정족수 **QUORUM** : 행정위원회의 투표권 회원의 2/3 가 정족수가 된다.¹²

5. 시간과 장소 **TIME AND PLACE** : 행정위원회는 적어도 일년에 2 회 회합한다.¹³

6. 총회장 목사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ITS ROLE AS THE BOARD OF THE OFFICE OF THE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

6.1. 정책, 계획 및 인사 Policy, Planning and Personnel

6.1.1.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공석에 관해서는 총회 의장과 총회장 목사님과 상의한다.¹⁴

6.1.2. 총회장 목사를 위한 인적 자원에 관련된 업무를 검토한다.

6.2. 재정 Finance

6.2.1. 총회장 목사 사무실을 위한 재무 정책을 유지한다.

6.2.2. 총회장 목사 사무실의 예산에 관한 조치를 검토 및 권유한다.

7. 총이사회와의 관계에서 행정위원회의 역할

ROL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RELATIONSHIP TO THE GENERAL BOARD

7.1. 사업 항목 Business Items

7.1.1. 행정위원회 사업 항목은 총회장 목사 사무실에 정리된다.

7.1.2. 크리스천교회(제사회)의 장기간 업무계획과 관련된 보고서와 권유 사항은 각종 위원회, 대책본 Task forces 태스크포스, 위원회 Commission 및 Panels 패널에 의해서 준비된다.

7.1.3. 조치가 필요한 제안은 총이사회에서 평가와 검토되고, 총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7.1.4. 크리스천교회(제사회)의 정책에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된 사역이나 교회 기관은 총회행정사역 활동의 증진 및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총회장 목사 사무소를 통해 행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다.

7.1.5. 행정위원회가 교회 업무의 능률과 효과를 위해 개발한 권고안은 총이사회를 통해 총회에서 조치하도록 제출된다.

¹²도안 The Design 67

¹³도안 The Design 62

¹⁴도안 The Design 64

7.1.6. 여러 지역교회, 고등교육기관 및 교회의 일반사역을 위한 예산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총이사회의 선교재정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정위원회가 처리한다.¹⁵

7.1.7. 목사, 교회, 지역회 또는 이사회에 관한 이의 제기 사항은 총회장 목사 사무실을 행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다. 총회나 총이사회에서 그런 이의 제기 사항의 판결을 위한 다른 절차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총회 의장과 총회장 목사 그리고 이의 제기에 관여된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이의 제기 사항을 처리하도록, 행정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절차 후에만 그러한 사항을 처리한다.

7.2. 총회 사업 General Assembly Business

7.2.1. 행정위원회는 토론회 시간 및 권고 조치를 포함한 총회 사업에 관하여 총이사회에 검토, 평가 및 권고를 한다.

7.2.2. 그러한 모든 사업은, *도안 The Design* 과 *총회 절차의 특별 규정 Special Rules of Procedure for the General Assembly*, *총이사회의 현행 규정 Standing Rules for the General Board* 및 *행정위원회의 현행 규정 Standing Rules for the Administrative Committee*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8. 행정위원회 사업 항목 제출에 대한 요구 사항

REQUIREMENTS FOR FILING ADMINISTRATIVE COMMITTEE BUSINESS ITEMS

8.1. 행정위원회 사업 항목은 행정위원회 소집 20 일 전까지 서면으로 총회장 목사 사무실로 제시된다. 기타 사업은 행정위원회 회의 중에 행정위원회의 위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8.2. 제출 된 각 항목은 그것이 정보제공 만을 위한 것인지 또는 조치를 위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양식에 있어야 한다. 조치가 요구된 경우, 권고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간결한 근거가 포함된다.

8.3. 사업 항목이 제출되는 권한은 명확하게 표시되며, *도안 The Design*, 행정위원회의 현행 규정, 총 이사회 현행 규정 및 총회를 위한 특별 절차 규정에 부합된다.

8.4.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Circumstances Requiring Prompt Action

8.4.1. 총회 의장 또는 총회장 목사의 판결에 있어서, 행정위원회가 기존 정책 내에서 즉각적인 조치나 대응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개별적인 권한을 넘어서 행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가능하면 총회 의장 또는 총회 부의장 중의 한명이나, 총회장 목사가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연락 할 수 있고, 정족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행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¹⁵도안 The Design 65

8.4.2.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즉시 모든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되며, 다음의 행정위원회 정기 또는 특별 회의에 사업의 첫 번째 순서로 비준을 위해 제출된다.

9. 총이사회와 관련된 역할에서의 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IN ITS ROLE RELATED TO THE GENERAL BOARD

9.1. 자애주간 위원회 Week of Compassion Committee

- 9.1.1. 행정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자체의 현행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 9.1.2. 자애 주간 헌금은 그 미션과 업무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9.1.3. 재무보고서를 비롯하여 운영 문제에 대해 매년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9.1.4. 교회의 전반적인 임무에 관련하여, 자애 주간에 의해 기금조달되고 조율되는 컴패션 Compassion 및 재난 구호 사역의 전반적인 사명에 관해서, 총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
- 9.1.5. 자애 주간의 예산 보고서와 재정 보고서는 위원회가 먼저 승인 한 다음, 총회장 목사 사무실의 재무 감사 일환으로 행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 Finance Committee of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에서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위해서 행정위원회에 제출된다.
- 9.1.6. 자애 주간의 감사는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감사 일환으로 총이사회 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of the General Board 에서 받는다.

9.2. 인종 화해 선교위원회 Reconciliation Ministry Commission¹⁶

- 9.2.1. 행정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의 현행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9.2.2. 인종화해 헌금은 선교와 업무를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9.2.3.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운영 문제에 대해 매년 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9.2.4. 교회의 전반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교회의 인종화해/반인종차별 Pro-Reconciliation/Anti-Racism 의 우선 순위에 대한 책임에 관해 총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
- 9.2.5. 인종화해의 예산 및 재무보고는 먼저위원회가 검토한 다음, 총회장 목사의 재무 사무실의 일환으로 행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위해 행정위원회에 전달한다.
- 9.2.6. 인종화해를 위한 감사는 총회장 목사 감사실의 일환으로 총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접수된다.

9.3. 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 Pastoral Commission for Hispanic Ministries¹⁷

¹⁶인종화해선교 위원회의 이름은 GA-0731 에 의해 제정되었다.

¹⁷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전국 히스패닉 및 이중언어회 National Hispanic and Bi-Lingual Assembly 에 있다.

- 9.3.1. 이 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있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맥락에서, "Obra Hispana"의 본질 및 사명에 관하여, "Obra Hispana"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교회, 집회, 히스패닉계 이사회 및 전국 히스패닉계 이중언어회 National Hispanic and Bi-Lingual Assembly)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증진한다.
- 9.3.2. 위원회의 위원은 히스패닉계 이사회 이사 Hispanic Board of Directors, 2 명의 지방회장, 두명의 투표권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지방회장협회 College of Regional Ministers 는 2 년 임기로 2 명의 지방회장을 임명하며 교대로 봉사한다. 행정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두명의 행정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위원은 교대로 봉사한다. 지방회장협회의 총장 및 총회장 목사는 전국 히스패닉계 목사와 함께 임명에 관하여 협의한다.¹⁸

10. 위임된 기관의 조직 ORGANIZATION OF DELEGATED BODIES

- 10.1.**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위임된 기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위원장은 총회장 목사와 협의하여 행정위원회의 검토와 비준을 받아 총회 의장이 임명한다.
- 10.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10.3.** 상설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대책본부 Task forces, 위원회 Commission 또는 패널 Panes 이 배정된 책임을 이행하도록 설립되고, 그것들은 행정위원회에 보고된다.

10.4. 총 이사회의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of the General Board

- 10.4.1. 정책과 제안을 개발한다.
- 10.4.2. 클래스별 교대 회원을 갖는다. 필요한 기술 세트와 위원회의 업무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한다.
- 10.4.3.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예산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다.
- 10.4.4. 직원은 총회장 사무소에서 배정 받는다.
- 10.4.5. 통치위원회 Governance Committee 의 정기 검토를 받는다.
- 10.4.6. 보고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의 문서를 갖는다.

10.5.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 10.5.1. 특별하고 특정한 그리고 단일 업무를 위해 설립되고, 원래의 기관에서 명명된다.
- 10.5.2. 총회장 목사와 협의하여 총회 의장이 회원을 임명한다
- 10.5.3. 자금은 모체 또는 원래의 기관에서 지원되거나 할당 등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 10.5.4. 직원은 원래의 기관과 협의하여 총회장 목사 사무소에서 임명한다.
- 10.5.5. 원래의 기관이 정한대로 2 년 이상 10 년 이하 일 수 있다.

¹⁸히스패닉계 제자회 총회는 히스패닉 및 이중 언어회의 헌법 및 부칙 제 4 조에 언급되어있다.

10.5.6. 원래의 기관에게 보고한다

10.6. 대책본부 Task Force

10.6.1. 단일 목적이며 원래의 기관에 의해 명명된다.

10.6.2. 상대적으로 소규모 회원으로, 반드시 원래의 기관에서 올 필요는 없다.

10.6.3. 원래의 기관에서 단일 예산 할당한다.

10.6.4. 직원은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10.6.5. 2 년 이하의 기간으로 제한된다.

10.6.6. 원래의 기관에 보고한다.

10.7. 위원회 Commission

10.7.1. 한 조직의 범위를 넘어선 유일한 포커스로서, 총이사회에 조치를 취하고 권고한다.

10.7.2. 2 개 이상의 소스로 부터 교대제 회원으로 회원총회 또는 총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승인된다

10.7.3. 원래의 조직이 자금을 지원한다.

10.7.4. 직원은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10.7.5. 지속적인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격년제 검토를 통한 장기간 임용

10.7.6. 적절한 그룹에 대한 정기 보고서

10.8. 위원단 Panel

10.8.1. 총회의 우려를 돕는 특정 분야 또는 연구 분야의 전문가

10.8.2. 회원 자격은 원래의 기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승인된다.

10.8.3. 자금은 원래의 기관에서 제공한다.

10.8.4. 직원은 배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10.8.5. 임기는 승인 또는 검토 시점에 결정된다.

10.8.6. 원문서에서 지정된 주기 보고서

11. 공인된 단체 및 기타 단체 RECOGNIZED AND OTHER ORGANIZATIONS

11.1. 연감과 인명록 the Year Book and Directory 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11.2. 후원 조직을 요구한다.

11.3.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11.4. 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때, 총이사회를 대신하여 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될 수 있다.

12. 소멸시효 규정 SUNSET RULES

12.1. 승인된 행정위원회의 사업 항목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행정위원회가 위임한 모든 프로그램 및 우선 순위는 4 년으로 제한된다.

12.2. 실행 가능 조치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는 통치위원 Governance Committee 가 조사한다.

13. 행정위원회 위원 비용 EXPENSES OF ADMINISTRATIVE COMMITTEE MEMBERS

총회장 목사 사무소의 여행 경비 상환 정책에 따라 상환한다.

14. 개정안 AMENDMENTS

14.1. 통보 Notification

14.1.1. 이 현행 규정은 과반수 투표에 의해 행정위원회의 모든 회의에서 개정 될 수 있으며, 수정안이 시행되는 회의 30 일 이전에 행정위원회의 모든 위원에게 서면 통보가 제출된다.

14.1.2.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30 일 통보없이, 3/4 표결로 개정 될 수 있다.